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성평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20일,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24.11.1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25.9.24.)

-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진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지속적인 위법 행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위반 행위 이후에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가.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연계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금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청소년 고용 금지 출입 제한 등과 관련 나이를 속이는 등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u>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 ----- ----- ----- ----- ----- ----- ----- <u>그 사실을 통보하고,</u> <u>「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0조제1항¹⁾은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이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²⁾까지를

1)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뿐만 아니라 소속 학교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7,096건을 통보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장 및 친권자등을 구분하여 통계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함.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 6. (생략)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2021~2023년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통보 건수	4,432건	4,168건	7,096건

자료: 2023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³⁾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을 돕기 위하여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장의 신청(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보호지원 신청시 청소년 본인 동의 필요)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체육단체활동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보호지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4)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보호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5)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기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지원 실시 여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개인상담, 가족·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지원
 2. 인성교육, 취업훈련, 진로교육 및 건강교육 등의 지원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수련·문화·체육·단체활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 생활의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호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한 후 법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지원 실시 여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조사·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비행·일탈 유무 및 비행·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 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성가족부는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강박 등의 행위로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선도·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선도·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등의 친권자등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당 청소년이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선도·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6)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교내봉사, 사

6)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신분증 위·변조 등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한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여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생략) ② (생략)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u>3</u> <u>개월</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 <u>6</u> <u>개월</u> ----- -----.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u>통보하여야</u> 한다.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 ----- ----- ----- ----- ----- ----- ----- ----- ----- ----- ----- ----- <u>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